

청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520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2021. 1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해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21. 11. 9. 접수 제209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7973(본소), 2021가단58649(반소) 사건을 통해 원고가 C을 상대로 본소로 ‘마스크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와 ‘포장재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반소로 ‘방호복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물품대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바, 2021. 10. 28. 원고의 본소청구 중 ‘포장재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마스크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 및 C의 반소청구는 각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위 판결에 대해 C이 항소하여 원고의 본소 중 ‘마스크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변론이 이뤄진 결과 2023. 4. 6. “제1심판결의 본소 중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편의상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2023다229568) 진행 중이다.

다. C은 2021. 1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209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관련 항소심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것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보전채권의 부존재).

2)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